

# 반도체시스템전공 운영내규

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운영내규는 반도체시스템전공(Semiconductor System Major) (이하 '본 전공'으로 칭함)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용어의 정의)** 운영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제1전공 교원이라 함은 본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한 전임교원을 말한다.
- ② 제2전공 교원이라 함은 본 전공을 제2전공으로 선택한 전임교원을 말한다.
- ③ 전공교원이라 함은 본 전공을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 선택한 전임교원을 말한다.

## 제 2 장 졸업 및 학위

**제3조 (졸업학점)** 졸업학점은 학칙 제26조 (졸업학점) 및 학칙 시행세칙 제11장 졸업에 따르며, 기타 세부 사항은 <별표 1>과 같다.

**제4조 (졸업 및 학위)** 본 전공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학칙 제28조 (졸업 및 학위)에 따른다.

**제5조 (졸업인증)** 졸업인증제는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의 3 (졸업인증제)에 따른다.

## 제 3 장 재입학 및 학기재수

**제6조 (재입학)** 재입학은 학칙 제11조 (재입학)에 근거하여 다음 방식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

- ① 재입학은 전공주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가 임명하는 전공교원 2인이 함께 심의하고, 재입학 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재입학 여부를 결정한다.
- ② 심층면접은 재입학 신청자의 수학능력여부, 잔여재학기간 내 졸업가능여부 등을 종합 심사한다.

**제7조 (학기재수 및 과목재수)** 학기재수 및 과목재수는 학칙 제25조 (학기재수 및 과목재수), 학칙 시행세칙 제29조 (학기재수 및 과목재수)에 따른다.

## 제 4 장 편입생, 전과생 및 복학생

제8조 (편입생, 전과생 및 복학생) 편입생의 선발, 학점 인정에 대한 사항과 편입생, 전과생 및 복학생에 관한 일반사항은 학칙 제10조 (편입학), 제37조 (전과), 제41조 (복학)에 따르며,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전공교수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른다.

## 제 5 장 교과과정

제9조 (교과과정 편성 및 심의) 교과과정 편성은 학칙 제18조(교과편성)에 따르며, 개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.

①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가 교과과정 개편안을 전공교수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,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.

제10조 (수강신청) 수강신청은 학칙 시행세칙 제8조 (수강신청)에 따르며, 추가적으로 아래 조항을 따른다.

① 타 전공에서 개설한 과목이지만 전공간 협의로 해당 과목을 공유하기로 하고 이수를 했을 때 전공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코드쉐어(Code share)라 칭한다.

② 본 전공에서 인정하는 코드쉐어 과목을 학생이 이수할 경우, 해당 과목은 전공이수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. 단, 코드쉐어 과목이 복수/부전공, 연계/융합전공 등에 포함될 경우, 복수/부전공, 연계/융합전공 이수학점과 본 전공 전공이수학점으로서의 중복인정은 불가하다.

③ 코드쉐어로 지정된 과목은 수강신청 시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서 신청을 하지만, 이수 후에는 전공 과목으로 전환해준다.

## 제 6 장 장학생 선발

제11조 (적용 및 준용) 장학생의 선발은 학칙 제61조 (장학금의 지급)에 따른다.

## 제 7 장 복수전공, 부전공, 심화전공

제12조 (복수전공, 부전공)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는 학칙 시행세칙 제21조(다전공)에 따르며, 추가적으로 아래의 조항에 따른다.

① 타 전공 학생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수용인원은 전공의 여건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

② 타 전공 학생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을 제한할 경우, 해당 이수과정의 선발기준은 신

청학생의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본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전공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, 전공필수 과목 및 전공선택 과목을 합하여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본 전공을 부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신 청학생의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에 본 전공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이 있고 그 과목을 이수한 경우 12 학점 이내에서 중복인정 받을 수 있다.

**제13조 (심화전공)** 심화전공 이수는 학칙시행세칙 제23조(심화전공)에 따르며, 추가적으로 아래의 조항에 따른다.

① 심화전공 이수를 위해 추가적으로 이수하는 12학점은 3학년과 4학년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한정한다. 단, 해당 과목이 제1전공과 제2전공에 동일하게 있고, 본 전공이 아닌 나머지 전공에서 그 과목을 이수한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중복인정 받을 수 있다.

## 제 8 장 전공교수회의

**제14조 (구성과 소집)** ① 전공교수회의는 전공주임교수가 회의를 주관하며, 구성원은 모든 전공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전공교원은 전공교수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.

③ 전공교수회의의 소집은 전공주임교수가 학교 전체 또는 본 전공의 운영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 적어도 1주일 이전에 전공교원에게 공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④ 본 전공의 운영에 대하여 전공교원의 1/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전공주임교수는 전공교수회의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,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 3항의 절차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15조 (심의사항)** 전공교수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제규정 개정

② 기타 전공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6조 (의사 및 의결 정족수)** 전공교수회의는 회의 시작 직전 참석인원 확인에서 전공교원 전체인원의 2/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, 참석하지 못하는 교수 중 사전에 전공주임교수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를 참석이원수에 합한다. 전공교수회의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채택된다. 개최 조건이 만족되어 회의가 시작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장을 떠나는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참여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적용한다.

<별표 1> 전공 최소 이수요건

구분	전공 과목 최소이수학점	비고
제1전공 및 제2전공	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총 36학점 이상 취득 (제1전공과 제2전공에 동일한 과목이 있는 경우, 이러한 과목에 대한 학점취득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)	
심화전공	전공 최소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3학년과 4학년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총 12학점 이상 취득 (3학년과 4학년 과목으로 제1전공과 제2전공에 동일한 과목이 있고, 본 전공이 아닌 나머지 전공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경우 6학점까지는 중복으로 인정)	